

장애영유아 의무교육과 국가책임교육 구축방안

박창현 연구위원

본고에서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국가책임교육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장애, 비장애 차별 없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을 어렵게 하는 법과 통계,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상 차별이 존재하는 현황을 다루었다. 정책과제로 유보통합 기반,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국가책임제 구축 필요, 생애주기별 장애영유아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1. 문제 제기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에 소속된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어 교육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의무교육에서 중요한 양질의 교사 배치와

학급 구성 및 예산 지원 등의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가 크다. 장특법 제 19조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 있음에도 말이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9일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유치원 이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들이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인디고, 2022).

실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는 유보통합 뿐이다.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유보통합을 통한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유보통합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 환경과 체제 개편을 하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 교육

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제체개편을 통해 유-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하여 유-보 분리 체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영유아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해야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필두로, 돌봄 정책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비전을 교육에 적용해보자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의 제공, 자신의 적성이나 호기심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개별화 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의 분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을 하는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3-5세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 교육철학을 실현해보자면,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통합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하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 과정을 거치면서 학제개편 및 유보통합 내용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은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였다(교육부, 2022b).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 책임을 확대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출발선 단계부

터 국가책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기의 양질의 교육제공, 안전한 유아의 성장 도모, 학부모 부담경감을, 이를 위해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교육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질높은 교육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0-2세에 대해서도 교육지원 강화를 약속하였다(교육부, 2022b). 이후 여러 논의 끝에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준비단이 9월 14일 발족되고, 2022년 하반기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국가책임교육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을 어렵게 하는 법과 규정의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상 차별이 존재하는 현황을 검토해 본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과 장애영유아 무상, 의무교육 실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관련 법적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¹⁾ 제3조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치중고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제1항은 장애 유아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은 만3세 이상의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7954호]

장애 유아에게만 적용되고, 만3세 미만의 장애 영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 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장특법 시행령2)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동법 9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자에게 통보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를 규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 유아의 경우 이러한 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는 유치원에서 받아야 하지만 유치원이 이러한 장애 유아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장애 유아 의무교육 간주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유아가 받게 되는 교육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 유아의 균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 장애 유아 의무교육 간주규정에 대해서는 장애 유아 의무교육에 있어서 보육기관에서의 보육을 의무교육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반대가 제기되었으나, 유아교육은 이미 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현실론에 기반한 주장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의무교육 간주규정을 수용하되, 최소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 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진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완되었다(정영조, 2007: 21).

동법 제19조제1항 본문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19호)

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19조제1항 단서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의무교육 간주규정인데, 만약 의무교육 간주규정이 삭제된다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 유아는 취학의무를 면제 및 유예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해당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동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의 요건으로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러한 배치 기준을 충족할 만큼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의무교육 간주규정이 삭제된다면, 이를 근거로 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사 배치 규정도 동시에 삭제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사 배치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사 배치 기준 역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간주규정이 삭제될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대한 특수교사 배치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특수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3. 동일연령의 유아에 대한 서로 다른 제도³⁾

가. 법과 통계

3-5세 동일연령의 유아들이 교육부, 복지부

3) <박창현·김근진·김경희·정유나(2021b). 장애아동 종합통계 작성방안 연구.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를 일부 재구성함.

소속에 따라 통계도 달리 산출되어 정책대상자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사각지대에 없이 정책대상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통된 통계 속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책무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지원법」은 장애유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장애아동 통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 시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통계(매년)와 특수교육 실태조사(3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통계(매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3년)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아동은 특수교육통계에 포함되지만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거나 기관을 미이용하는 장애아동은 특수교육통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제2항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및 특수학교와 달리 교육부 관할이 아닌 복지부 관할의 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아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아동과 비교하여 동등한 교육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아동 통계의 통합을 통해 기관 유형의 차이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 통계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유형에 대한 항목의 차이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유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만

〈표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유형 구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1. 시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1. 지체장애인
	2. 청각장애		2. 뇌병변장애인
	3. 지적장애		3. 시각장애인
	4. 지체장애		4. 청각장애인
	5. 정서·행동장애		5. 언어장애인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6. 지적장애인
	7. 의사소통장애		7. 자폐성장애인
	8. 학습장애		8. 정신장애인
	9. 건강장애		9. 신장장애인
	10. 발달지체		10. 심장장애인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표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유형 매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시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건강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정서·행동장애	없음
의사소통장애	없음
학습장애	없음
발달지체	없음
없음	안면장애

3-5세 장애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통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준으로 항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영유아 뿐 아니라 다른 연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성인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유형을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없이 특수교육통계 작성 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매칭하는 방법을 장애유형 통합을 위해 고려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 유형 중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도

동일한 장애 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매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매칭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유치원에서 정서 행동장애를 가진 유아는 1명이지만, 정신장애를 가진 유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장애를 가진 유아는 없지만, 뇌전증 장애를 가진 유아는 2명으로 나타난다(교육부, 2021b: 42, 55).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통계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영유아도 특수교육대

상자로 선정하여 특수교육통계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나. 기관 이용 별 장애영유아 지원 내용

장애 영유아의 기관 이용은 각 시도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유치부에 배치되는 경우와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서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서를 제출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기관을 이용하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정책과제

가. 유보통합 기반, 모든 영유아를 위한 국가책임체제 구축 필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무상, 의무교육 추진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5세 장애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의무교육대상자로 논의해야한다.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경우, 일정기준을 통과하면 특수학교 등으로 전환하거나, 유아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교육으로 간주되는 기관들의 질 제고와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아교육과 보육, 유아특수와 장애영유아보육이 함께 유보통합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장애 영유아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위한 미래 (영)유아학교로의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0세에서 취학전 유아까지 평생교육체제 하에서 이음새없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제공

〈표 3〉 장애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와 어린이집의 지원 비교

유치원/특수학교(유치부) ⁴⁾	어린이집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급 • 방과 후 교육비 지원(영아는 바우처 카드만 해당)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 치료지원(기관 이용형 및 순회치료교육) • 보조공학기기 대여 • 기타 지원 사항 •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용 도서 대금, 학교급식비 지원(의무) •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공·사립 우유대금 및 사립 교육비(차액분)) •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실 및 급식실에 특수교육대상학생 명단 통보 (*특수교육지원청 별도 지원 항목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종일: (정부지원보육료)502,000원 (기관보육료)587,000원 • 방과후: (정부지원보육료)251,000원 (기관보육료)500,000원 ※ 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에게 전자바우처형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주: 1) * 유아는 현장체험학습비 공식지원대상은 아니다. (유아) 특수학교의 교육운영비로 융통성있게 지원하기도 하여 지역별, 학교별 편차가 존재
 자료: 1) 유치원/특수학교(유치부): 경기도 양평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2021). 장애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 지원. 공유자료.
 2) 어린이집: 경기도 고양특례시청 보육지원팀 (2021). 장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공유자료.

4) 경기도 양평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2021). 장애 영유아에 대한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 지원. 공유자료.
 5) 경기도 고양특례시청 보육지원팀 (2021). 장애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공유자료.

하는 방향으로 영유아학교로의 체제 개편을 제안한다.

나. 생애주기별 장애영유아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책 전반에 걸쳐 의무교육기반 장애-비장애 완전 통합 시스템 내에서의 장애 영아와 유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기진단과 치료, 교육이 원스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의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는 장애 판정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 시스템과 연계하여 장애 발견초기부터 치료까지 이음새 없이 연결되는 구조적 틀을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미 21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된 <장애

아동 지원 종합대책(안):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2021. 5. 12, 관계부처 합동)⁶⁾에 제시된 범부처 종합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아동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단계별, 분야별 지원방안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있다. 정부는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을 중심으로 이행사항과 성과를 살펴보고, 유보통합의 큰 틀 안에서 세부과제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그리는 한편, 다른 트랙으로 장애영유아 종합지원체계의 생애주기별 지속가능성도 함께 추진해나가야 한다. 유보통합은 단계적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 로드맵이 없으므로, 종합지원책을 로드맵과 오버랩하면서 짜 나가되, 현재 실현 가능한 지원은 천천히 추진해나가면서 장애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6) 관계부처 합동(2021).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